

「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(제10판)」 정오표

쪽	오(誤)	정(正)
1	<p>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확진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,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치치를 받은 확진환자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▶ 지원대상 세부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확진) 「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 Ⅱ 사례정의 1.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○ (중환자실 격리실)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된 경우 ○ (중증치치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Ⅲ 확진환자 관리 1.확진환자 관리에서 <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>에 해당하는 위중증 치치* <p>* 비침습인공호흡기, 고유량 산소요법, 침습인공호흡기, ECMO, CRRT</p> </div>	<p>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확진되어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,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치치를 받은 확진환자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▶ 지원대상 세부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확진) 「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 Ⅱ 사례정의 1.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*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자 포함(22.3.14.-별도 안내 시까지, 2023.8.31.부터 소급 적용) ○ (중환자실 격리실 등)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됨..경우 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(지정격리병상)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..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○ (중증치치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Ⅲ 확진환자 관리 1.확진환자 관리에서 <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>에 해당하는 위중증 치치* * 비침습인공호흡기, 고유량 산소요법, 침습인공호흡기, ECMO, CRRT </div>
3	<p>○ (지원범위)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, 중증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▶ 지원범위 상세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중환자실 격리입원료) 가-9 중환자실 입원료,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○ (미지원) 진찰료(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), 검사비, 영상진단료, 식대, 중증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 </div>	<p>○ (지원범위)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, 코로나19 관련 중증치치 비용을 포함한 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▶ 지원범위 상세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원) 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, 중증치치와 관련 있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 - (중환자실 격리입원료) 가-9 중환자실 입원료,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- (격리병실료) 「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(지정격리병상)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니지만..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에 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'가-10 격리실 입원료' 지원 ○ (미지원) 진찰료(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), 검사비, 영상진단료, 식대, 중증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 </div>

쪽	오(誤)	정(正)
4	<p>○ (청구)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*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</p> <p>* 환자부담금: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, ③필수비급여항목 등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▶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진료비세부내역서)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○ (의사소견서) 의사소견서 상 △진단명, △최초 확진 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○ (중증면역저하자)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), △진단명, △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위중증 및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○ (외국인 치료비)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○ (환자가 납부한 경우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(또는 보호자)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</div>	<p>○ (청구)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*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</p> <p>* 환자부담금: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, ③필수비급여항목 등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▶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진료비세부내역서)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○ (의사소견서) 의사소견서 상 △진단명, △최초 확진 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○ (중증면역저하자)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), △진단명, △검체채취일, △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, △위중증 및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○ (외국인 치료비)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○ (환자가 납부한 경우) 입원·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(또는 보호자)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○ (중환자실 선담치료병상) 중환자실 선담치료병상(지정격리병상)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,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 </div>
16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p>Q1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?</p> </div> <p>○ ㉠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확진되어, ㉡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, ㉢중환자실 격리실에서 ㉣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환자</p> <p>※ '23. 8. 31. 검체채취자부터 적용하며,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</p> <p>① (확진) 「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II 사례정의 1.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</p> <p>② (10일 이내 내원)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, 증상악화로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처치를 받는 경우도 지원</p> <p>* (예시) (9.1.) 확진 → (9.10.) 내원(일반 병실 등 입원) → (9.11.)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→ (9.12.) 중증처치 시작</p> <p>③ (중환자실 격리실)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'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'*가 산정된 경우</p> <p>* 수가코드: AJ010, AJ011, AJ020, AJ021</p> <p>④ (중증처치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III 확진환자 관리 1.확진환자 관리에서 <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>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</p> <p>※ (주의)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</p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p>Q1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?</p> </div> <p>○ ㉠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라 확진되어, ㉡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, ㉢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㉣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</p> <p>※ '23. 8. 31. 검체채취자부터 적용하며, 이전 검체채취자의 경우 이전 지침을 따름</p> <p>① (확진) 「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II 사례정의 1.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</p> <p>② (10일 이내 내원)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원하고, 증상악화로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중환자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중증처치를 받는 경우도 지원</p> <p>* (예시) (9.1.) 확진 → (9.10.) 내원(일반 병실 등 입원) → (9.11.)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→ (9.12.) 중증처치 시작</p> <p>③ (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)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'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'*가 산정된 경우 또는 중환자실 선담치료병상(지정격리병상)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,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(지정격리병상 등 위중증 환자 대상 병상 입원환자: 지원대상에서 제외)</p> <p>* 수가코드: AJ010, AJ011, AJ020, AJ021</p> <p>④ (중증처치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)」 III 확진환자 관리 1.확진환자 관리에서 <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>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</p> <p>※ (주의)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</p>

쪽	오(誤)	정(正)
17	<p>Q3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기간?</p> <p>○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</p> <p>※ (주의)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</p> <p>- (중증면역저하자)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하고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내원한 경우도 지원</p> <p>* (예시) (9.1.) 확진 → (9.13.) 내원 → (9.14.)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→ (9.15.) 중증처치 시작</p> <p>**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20일 초과)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</p> <div data-bbox="259 635 1120 813"> <p>◆ 지원기간</p> </div>	<p>Q3. 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기간?</p> <p>○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</p> <p>* 중증환자 진단(의료병상(중환자실) 등) 중 중환자실이 아닌 곳만 한정하여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병상</p> <p>※ (주의)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이 아님</p> <p>- (중증면역저하자)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하고,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초과하여 내원한 경우도 지원</p> <p>* (예시) (9.1.) 확진 → (9.13.) 내원 → (9.14.)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→ (9.15.) 중증처치 시작</p> <p>**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(20일 초과)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</p> <div data-bbox="1182 667 2042 826"> <p>◆ 지원기간</p> </div>

쪽	오(誤)	정(正)
18	<p>Q4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?</p> <p>○ (지원범위)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,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▶ 지원범위 상세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중환자실 격리입원료) 가-9 중환자실 입원료,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○ (미지원) 진찰료(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), 검사비, 영상진단료, 식대,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 </div> <p>- (중환자실 격리입원료) 중증처치 기간 중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분류번호 '가-9 중환자실 입원료', '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'만 지원하며 식비,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미지원</p> <p>*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료 중 중환자실 마스크 비용(수가코드: AJ031) 포함하여 지원</p> <p>○ (미지원) 진찰료(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), 검사비, 영상진단료, 식대,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</p> <p>- (응급실)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응급실 치료비 미지원</p> <p>- (퇴원약)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축소에 따라 퇴원약 및 관련 부대비용* 미지원</p> <p>* 퇴원약제비, 퇴원약조제료, 외래의약품관리료</p> <p>- (확진환자 투석) 코로나19 투석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와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행위 수가(OH011) '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사업'에서 지원사항 없음</p> <p>- (코로나19 PCR) 코로나19 PCR 검사비는 '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사업'에서 지원사항 없음</p>	<p>2. 지원 및 청구범위</p> <p>Q4.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?</p> <p>○ (지원범위)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,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 등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▶ 지원범위 상세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원) 처치 및 수술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, 중증처치와 관련 있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 - (중환자실 격리입원료) 가-9 중환자실 입원료,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- (격리병실료)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(지정격리병상)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에 한함 ○ (미지원) 진찰료(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), 검사비, 영상진단료, 식대,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(선별급여 포함) </div> <p>- (중환자실 격리입원료)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분류번호 '가-9 중환자실 입원료', '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'만 지원하며 식비,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미지원</p> <p>* 가-9-1 중환자실 내 격리 관리료 중 중환자실 마스크 비용(수가코드: AJ031) 포함하여 지원</p> <p>- (지정격리병상 병실료)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(지정격리병상)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니지만,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에 한하여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'가-10 격리실 입원료'만 지원하며, 식비,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미지원</p> <p>* 가-10 격리실 입원료 중 마스크 비용(수가코드: AK034, AK035) 포함하여 지원</p> <p>*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(지정격리병상)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,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외상소견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</p>